

#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을 위한 인증 가이드라인**

2018. 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 목 차

---

## 제 1 장 베트남 개괄

### 제1절 태국 개괄

1) 국가 개요 .....	5
2) 베트남-한국의 관련 현안 .....	6
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6
4) 수출입 동향 .....	17
5) 한국과의 교역 동향 .....	21
6) 한국기업 진출 현황 .....	24
7) 베트남의 경쟁력과 한계점 .....	27

## 제 2 장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TBT)

### 제1절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

1) 베트남의 연도별 WTO TBT 통보문 현황 .....	30
2) 베트남의 WTO TBT 통보문 산업별 동향 .....	34
3) 베트남의 WTO TBT 통보문 전체 동향 및 시사점 .....	36

## 3. 베트남의 표준, 인증제도

### 제1절 베트남의 표준제도

1) 베트남의 국가 표준 체계 구성 .....	38
2) 베트남의 국가 표준 .....	40

### 제2절 베트남 강제인증제도

1) 베트남의 강제 인증 제도 .....	42
2) 베트남의 임의 인증 제도 .....	45
3) 베트남의 기타 인증 제도 .....	46

### 제3절 베트남 에너지효율 제도

1)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제도 .....	61
-------------------------	----

참고문헌 및 부록 ..... 61

- 1) 참고문헌
- 2) 베트남 강제인증 부처별 관리대상 품목
- 3) 베트남 인증 대상 품목 기술규정 현황
- 4) 베트남 인증 신청서 양식

본 인증 가이드라인은 2018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대응 컨소시엄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태국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WTO TBT 통보문 정보는 KnowTBT 포털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록 시 TBT 경보 서비스 수신이 가능합니다. ([www.knowtbt.kr](http://www.knowtbt.kr))

---

# 제 1 장 베트남 개괄

---

# 1

## 베트남 개괄

### 1) 국가개요



### 베트남 개요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위치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동경 107° 50', 북위 16° 10')
- 면적 : 33만 966.9 km<sup>2</sup>(한반도의 약 1.5배)
- 기후 : 아열대(북부), 열대몬순(남부)
- 수도: 하노이(Hanoi)
- 인구: 9,500만명 (2017)
- 언어: 베트남어
- 건국(독립)일: 1945년 9월 2일
- 정부형태 : 일당 독재 체제(임기 5년 단원제)
- 국가원수 : Nguyen Phu Trong(공산당서기장)  
Tran Dai Quang(국가주석)
- GDP : US\$ 2,414억 (2018년 IMF 기준)
- 1인당 GDP : US\$ 2,552억 (2018년 IMF 기준)

## 2) 베트남-한국의 관련 현안

### □ 한-베트남 경제 협력 확대

-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3대 수출시장으로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 관계를 확대하여 25년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20배 가량 성장함
-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교역액, 투자액, 인적교류, ODA 규모 1위인 핵심 파트너로 2018년 한국-베트남 정상회담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교역 10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호혜적 무역 확대 기반 조성 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촉진의 내용이 포함됨
- 한국은 매년 10억 달러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2018년 6월 기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임

### □ ASEAN의 FTA HUB국

- 2007년 한국은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아세안 FTA는 한국-베트남 간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정식 발효된 이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도 지속 증가 중임

### □ 전기·전자 분야 클러스터 베트남 박닌성

- 베트남 소도시인 박닌성이 베트남 내 제조업의 메카이자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하며 2017년 베트남 58개 성 중 경제성장률(19.1%) 1위를 기록
-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 내 전기·전자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화테크윈, 오리온, 오투기 등도 투자에 나섬

## □ 중소기업의 신남방 판로개척 지원

- 2017년 한국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2018 베트남 수출개척단을 파견하여 신규 수출 계약 성과를 거둠
- 수출개척단에는 산업단지 자동차부품, 화장품, 전자제품 분야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현지 바이어 100개사와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20만 달러의 성과를 올림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중소기업 5개사와 베트남 스마트 물관리 기술 현지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베트남의 수도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Issue &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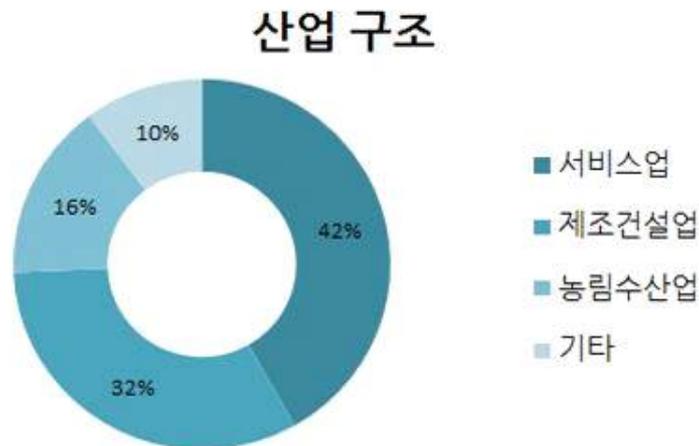
#### 베트남의 수입제품 규제 강화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는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는 등 무역적자로 인하여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도금강판에 반덤핑 과세 부과 및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도 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외국 기업의 기술전수 및 로컬기업 부품 구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한국 중소 업체들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win-win'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KOTRA 현지 무역관을 통하여 검토해야 한다.

### 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 서비스 강국으로서의 베트남

- 베트남의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 내에서 4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베트남 경제의 1/3 이상을 차지함
- 서비스업 중 도소매유통업, 금융, 부동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제조건설업이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이 15.5%로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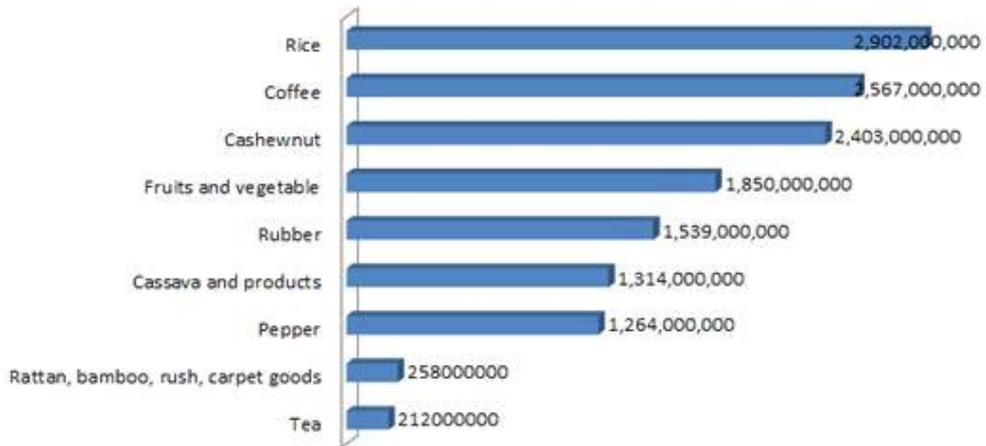


#### □ 농수산물식품 산업

- 베트남 인구의 약 7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이 중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 부문이 베트남 전체 GDP의 12.7%를 차지함
- 농업은 베트남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쌀 수출국 1위, 커피 수출국 2위, 고무 수출국 3위에 해당함

- 2015년 기준 베트남 농산물 수출에서 쌀이 29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커피, 캐슈넛, 과일 및 채소, 고무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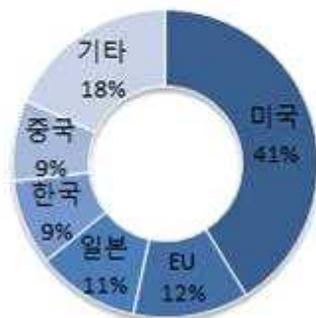
베트남 주요 농산물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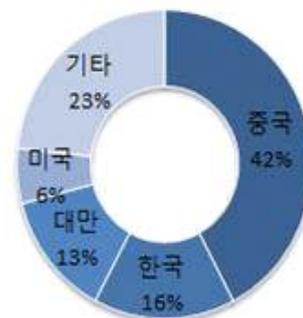
□ 섬유 산업

- 섬유 및 의류산업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전체 제조업 총생산액의 10%를 차지하며 베트남 총수출액의 15%를 수출하고 있음
- 2015년 기준 베트남 섬유·의류 국가별 수출은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순이며 국가별 수입은 중국, 한국, 대만, 미국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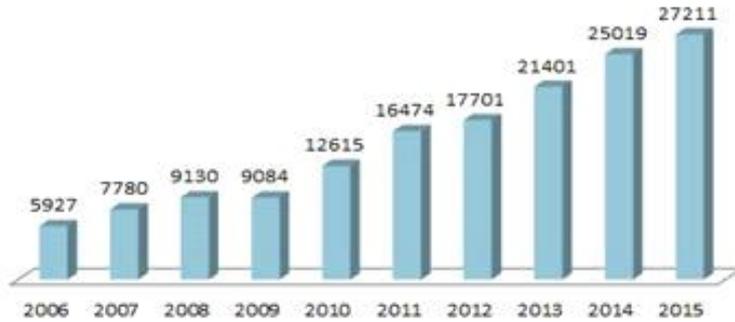
베트남 섬유류 국가별 수출



베트남 섬유류 국가별 수입



##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수출 추이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베트남 섬유·의류제품의 수출 비중은 총 섬유·의류 수출액의 60% 이상이며,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의 주요 투자국은 한국과 대만 등으로 약 500여개의 한국 투자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음
- 베트남은 세계 2위 신발 수출국가이며 2017년 약 146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함
- 베트남 내 한국 신발 브랜드의 인지도는 낮으나, 신발 산업은 베트남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육성 분야로 원부자재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음

## □ 전기전자 산업

- 삼성전자의 베트남 투자진출 이후 휴대전화 사업은 베트남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베트남 최대 수출품목으로 부상함
-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삼성, LG, 캐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의 글로벌 전자 기업들이 베트남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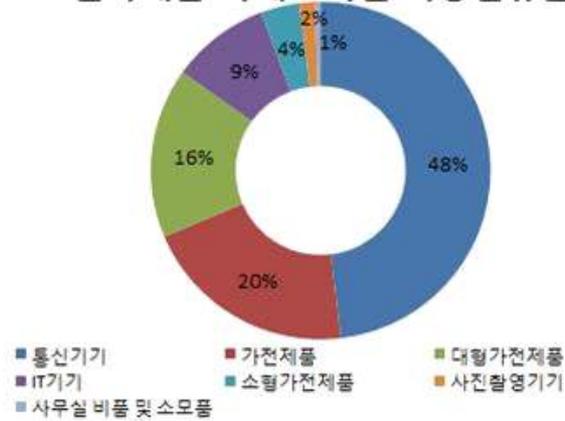
##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입



주: 전자제품은 휴대전화 및 부품, 컴퓨터, 가전제품 및 부품, 카메라, 비디오레코더와 그 부품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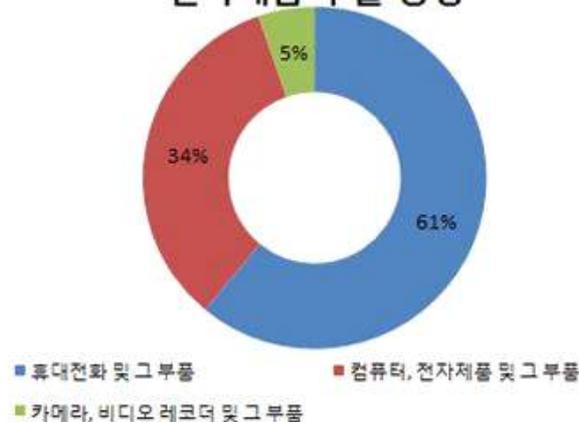
- 베트남 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31.8%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베트남 전자제품 최대 수출 시장은 유럽연합과 미국임
- 2016년 전자제품 수입액은 396억 달러이며 베트남 전자제품 최대 수입 시장은 한국이며 중국, 대만, 일본 순임

전자제품 카테고리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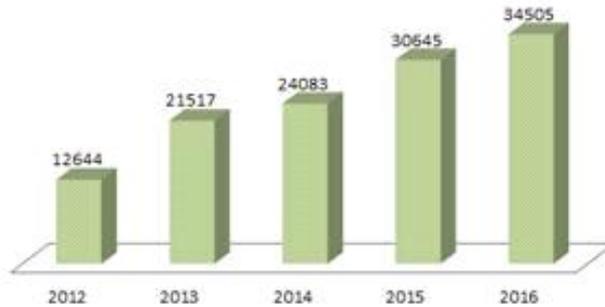
- 베트남 시장에서 통신기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전제품, 대형가전제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전자제품 수출 동향



- 베트남 전자제품 수출은 휴대전화 및 그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카메라, 비디오 캠코더 및 그 부품이 그 뒤를 이음

### 베트남 휴대전화 및 부품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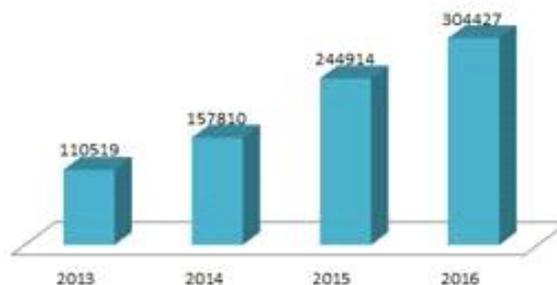


- 최근 휴대전화 수출액은 베트남 총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베트남 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 베트남은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부상하며, 2016년 345억 달러, 2017년 45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전기전자 산업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의 임금상승과 베트남의 FDI 인센티브,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 등이며 글로벌 가전기업을 베트남에 끌어들이고 있음

### □ 자동차 산업

-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30만 4,427대를 기록함
- 2014년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량 및 수출 수요 충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함

### 베트남 내 자동차 판매량 추이



- 베트남의 주요 완성차 수입국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이며, 태국 완성차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및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등으로 역내 관세 인하가 발생하여 태국으로부터의 완성차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베트남의 완성차 주요 수입국**

(단위: 대, 달러)

순위	국가	2016		2017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1	태국	34,242	645,221,219	38,244	702,870,827
2	인도네시아	3,742	43,595,500	16,829	293,376,185
3	중국	10,880	420,341,658	11,966	447,530,294
4	한국	20,098	309,212,589	8,909	224,997,742
5	일본	7,208	279,200,155	3,284	120,558,136

- 베트남 현지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의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2016년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여 약 17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자동차부품(HS Code 8708)  
시장 규모**



-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국은 한국, 태국, 일본, 중국 등이며 한국산 부품의 수입액이 가장 높음

**베트남의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국(HS Code 87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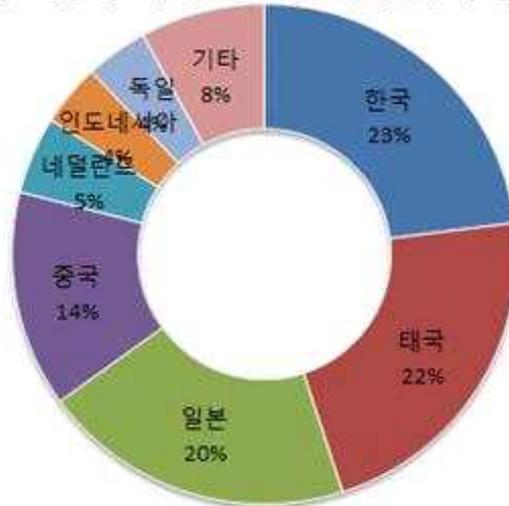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변화
1	한국	235,539	335,867	389,479	16.0
2	태국	233,749	305,657	378,367	23.8

3	일 본	228,684	347,876	341,224	-1.9
4	중 국	169,244	310,807	236,721	-23.8
5	네덜란드	64,567	51,572	89,849	74.2
6	인도네시아	39,584	48,888	74,991	53.4
7	독 일	35,548	54,551	72,949	33.7
8	싱가포르	84	342	24,061	6935.4
9	말레이시아	8,105	9,973	20,127	101.8
10	대 만	8,991	11,311	18,422	62.9

-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입국으로 2016년 기준 총 수입액의 23%를 차지함
- 2014년부터 3년간 베트남의 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증가 추이에 있으며 2016년 기준 수입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여 3억 8,749만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의 국가별 자동차부품 수입액



베트남의 자동차부품 품목별 주요 수입국(2016년 HS Code 8708 기준)

HS Code	품목명	총수입액	상위 3개 수입국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21,773	태국 일본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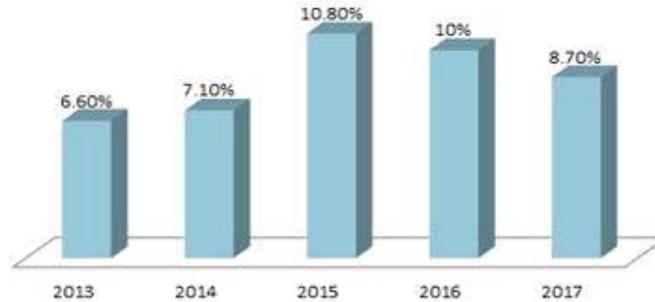
8708.21	안전벨트	13,927	일본
			태국
			독일
8708.29	차체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	301,119	일본
			태국
			독일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66,808	중국
			일본
			태국
8708.4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308,658	네덜란드
			일본
			태국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및 그 부분품	71,925	중국
			태국
			일본
8708.70	로드 휠과 그 부분품 및 부속품	46,759	중국
			태국
			일본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	39,902	중국
			태국
			일본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26,954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8708.92	소음기, 배기관과 그 부분품	22,820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57,361	일본
			중국
			한국
8708.94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58,765	태국
			일본
			중국
8708.95	팬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14,744	일본
			태국
			한국
8708.99	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	659,270	한국
			태국
			중국

-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Decree 116/2017/ND-CP에 따라 베트남 내 완성차 수입 규제가 강해지며, 2018년 1월 첫 보름 동안의 수입량은 급격하게 감소함

## □ 건설/인프라/플랜트 산업

- 2017년 기준 베트남 건설 산업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여 127억 달러를 기록함

베트남 건설산업 시장규모 증감률



- 2018년 베트남 건설 시장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통, 에너지, 통신, 주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요가 늘고 FDI 금액 유입 증가로 지속 성장이 전망됨
- 베트남 정부는 지역 사회·인프라 건설을 위해 2020년까지 86억 달러의 정부 재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이외에도 철도, 항구 부문에서 ‘2020 베트남 철도개발전략 및 비전 2050’, ‘2020-2030 베트남 항구시스템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임
- 베트남 인프라·건설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10.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분야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음
- 베트남의 제조업이 성장으로 인한 산업용 전력 수요 확대에 전력 생산량 및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 의료 산업

- 2016년 기준 베트남 의약품의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인도, 독일, 한국, 미국 등이며 한국은 점차 수입이 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전력생산, 소비량 추이



## 베트남의 주요 의약품 수입국(HS Code 30류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14	2015	2016	변화
1	프랑스	261,222	287,928	339,388	17.9
2	인도	269,056	269,669	276,968	2.7
3	독일	196,551	210,938	236,886	12.3
4	한국	166,436	189,283	205,010	8.3
5	미국	118,727	156,087	202,480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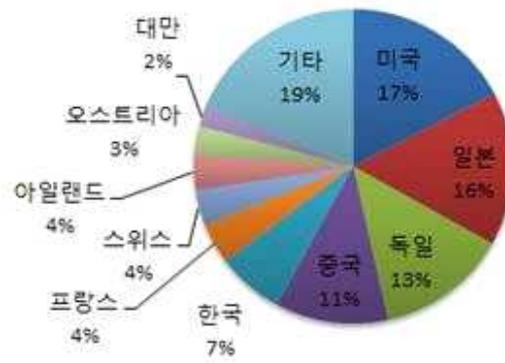
- 베트남 현지의 보건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기기 시장도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성장 중임
-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영상진단기기가 전체 매출의 30%의 판매액을 기록함

##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



- 2015년 기준 베트남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등이며 베트남의 對미국 수입액은 1억 4218만 달러로 전체의 17%를 차지함

### 베트남 의료기기 국가별 수입



#### 4) 수출입 동향

##### 최근 베트남 수출입 실적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수출	1,766.3	2140.2	1141.8
수입	1,741.1	2110	1108.2
무역수지	25.2	30.2	33.6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1.~10.	변화
1	미 국	23,869	28,656	33,480	31,551	16.8%
2	중 국	13,651	14,906	17,141	17,312	15.0%
3	일 본	13,259	14,704	14,137	11,946	-3.9%
4	한 국	6,631	7,144	8,932	9,433	25.0%
5	홍 콩	4,107	5,203	6,965	4,979	33.9%
6	독 일	4,730	5,185	5,705	4,822	10.0%
7	UAE	4,139	4,628	5,695	4,341	23.1%
8	네덜란드	2,937	3,769	4,762	4,824	26.3%
9	말레이시아	4,926	3,931	3,584	2,641	-8.8%
10	호 주	3,514	3,990	2,906	2,343	-27.2%
<b>전체</b>		81,763	92,116	103,307	94,192	12.1%

주: 변화는 201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 베트남의 수출 현황

- 2018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 수출액은 114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10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함
- 베트남 수출, 수입은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무역수지는 33.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수출액 기준으로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은 미국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음
- 2015년 기준 베트남의 對미국 수출액은 약 335억 달러로 전체의 20.7% 비중을 차지하며 對중국 수출액이 약 171억 달러로 10.6%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4위 수출국가로 수출액은 약 89억 달러이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5%의 수출 증가를 보임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휴대폰 및 부품	34,317	13.8	45,270	31.9	22,618	16
2	섬유·의류	23,841	4.6	26,040	9.3	13,642	15.7
3	전자·컴퓨터 및 부품	18,959	21.5	25,940	36.8	13,441	15.6
4	기계공구 및 부품	10,143	24.3	12,770	28	7,884	31.5
5	신발	13,000	8.3	14,650	12.7	7,692	9.2
6	목재 및 목제품	6,969	1.1	7,660	10	4,124	12.4
7	차량제외 운송수단 및 부품	6,058	3.7	6,990	15.4	4,028	19.4
8	수산물	7,053	7.4	8,320	18	3,968	11.3
총계		120,340	-	147,640	-	77,397	-

-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휴대폰 및 부품, 섬유·의류, 전자·컴퓨터 및 부품, 기계공구 및 부품, 신발 등이 있음
- 2018년 상반기 기준 1위 수출 품목은 휴대폰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26.1억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섬유·의류가 그 뒤를 이어 136.4억 달러를 수출함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3	2014	2015	2016.1.~10.	변화
1	중 국	36,954	43,868	49,527	40,238	12.9%
2	한 국	20,698	21,736	27,614	26,002	27.0%
3	일 본	11,612	12,909	14,367	12,224	11.3%
4	대 만	9,424	11,085	10,993	9,242	-0.8%
5	태 국	6,311	7,119	8,284	6,942	16.4%
6	미 국	5,703	6,284	7,796	6,860	24.1%
7	싱가포르	5,232	6,827	6,038	3,987	-11.6%
8	말레이시아	4,104	4,193	4,201	4,126	0.2%
9	독 일	2,963	2,623	3,213	2,298	22.5%
10	인 도	2,883	3,132	2,657	2,142	-15.2%
<b>전체</b>		<b>105,884</b>	<b>119,776</b>	<b>134,690</b>	<b>114,061</b>	<b>12.5%</b>

주: 변화는 201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 베트남의 수입 현황

-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이 베트남의 주요 수입국이며 우리나라는 2위를 기록함
- 2015년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약 4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총 수입의 약 32.8%의 비중을 차지함
-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은 2위 수입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이 약 27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전자·컴퓨터 및 부품	27,874	20.5	37,710	35.2	19,772	14.7
2	기계공구 및 부품	28,371	2.9	33,670	18	15,938	-8.5
3	섬유·신발 원자재	5,066	1.3	5,420	7.1	11,796	14.2

4	휴대폰 및 부품	10,559	-0.3	16,340	54.8	5,991	-4
5	철강	8,016	7.2	9,010	13.5	4,930	6.4
6	석유제품	4,806	13.5	7,040	38.3	4,661	40.4
7	플라스틱	5,066	1.3	7,320	16.8	4,326	19.4
8	기타금속	4,944	-7.3	5,430	12.7	3,426	16.4
9	플라스틱 제품	4,396	17	5,380	22.1	2,788	11.3
10	화학제품	3,793	11.1	4,546	19.2	2,459	24.9
총계		102,891	-	131,866	-	76,087	-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으로는 전자컴퓨터 및 부품, 기계공구 및 부품, 섬유·신발 원자재, 휴대폰 및 부품, 철강 등이 있음
- 2018년 상반기 기준 1위 수입 품목은 전자컴퓨터 및 부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197.7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석유 제품이 40.4%, 섬유·신발 원자재가 14.2% 증가하여 주요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 5) 한국과의 교역 동향

###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입 현황

對베트남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수출	22,352	27,773	32,779	47,749	23,546
수입	7,990	9,803	12,495	16,176	9,390
무역수지	14,367	17,971	20,155	31,573	14,156

- 2018년 상반기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 대상국, 7위 수입 대상국임
- 2018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베트남향 수출액은 2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함
- 반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한 93.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4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 현황

-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은 현지 투자기업 생산과 관련한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직물,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등이며 최근 전자부품 및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19.2% 증가함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의 품목의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주요 전자제품 기업이 베트남 내 생산을 확대하며 현지 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부품 조달의 용도로 증가함
- 반면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의 경우 한국 휴대폰의 생산거점이 베트남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지 부품 조달이 늘어나 지속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함

- 이외에도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4% 증가하였으며, 기타 기계류는 전년 동기 대비 57% 수출 감소를 보였음

**對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4,574	59.3	9,234	101.9	5,578	26.5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514	98.3	7,367	193.0	3,241	19.2
3	석유제품	1,093	232.8	1,987	81.8	1,530	58.4
4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5,192	22.2	3,286	-36.7	1,358	-19.1
5	기구부품	1,657	39.5	2,612	57.7	1,062	2.7
6	합성수지	1,203	8.4	1,442	19.8	785	13.6
7	편직물	1,077	10.3	1,118	3.8	565	4.0
8	플라스틱 제품	744	12.2	1,152	54.9	562	6.9
9	철강판	820	-2.3	985	20.1	541	17.3
10	기타기계류	594	-11.3	1,427	140.2	447	-57.0
총계		19,468	-	30,610	-	15,669	-

**□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 현황**

-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의류,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신변잡화, 목재류 등이며 상위 5위 수입품이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함
- 2018년 상반기 기준 베트남으로부터의 1위 수입 품목은 무선통신기기(휴대폰)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1% 증가하였으며 특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90.6%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함
- 이외에도 목재류가 전년 대비 61.6%, 산업용 전기기기가 전년 대비 34.9%의 수입 증가를 보였음

對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3,145	113.9	3,964	26	2,450	42.1
2	의류	2,449	9.3	2,875	17.4	1,418	25.8
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6	-57.4	604	976.6	633	190.6
4	신변잡화	642	19.2	797	24.2	519	30.6
5	목재류	428	23.1	511	19.4	375	61.6
6	컴퓨터	552	38	560	1.4	271	-9.1
7	반도체	123	10.5	374	203.7	219	26.7
8	기구부품	261	32.6	496	89.9	203	8.1
9	산업용 전기기기	287	28.8	317	10.3	202	34.9
10	영상기기	340	126.7	400	17.7	196	-9.2
총계		8,283	-	10,898	-	6,486	-

## 6) 한국기업 진출 현황

한국의 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5.
신규 투자건수	427	505	702	849	861	381
총 투자금액	4,466	7,328	6,727	6,353	8,494	2,625

한국의 베트남 주요 투자 업종

(단위: 백만 달러, 건)

순위	업종	총 투자건수	총 투자금액
1	제조업	3,828	42,946
2	부동산업	125	8,175
3	건설업	810	3,006
4	물류운수업	144	1,041
5	도소매업, 유지보수업	638	806
6	호텔, 외식서비스업	244	732
7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업	32	720
8	기술과학전문업	461	643

### □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동향

- 198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누적 기준, 한국의 베트남 투자건수는 6,833건, 총 투자금액은 595억 달러로 베트남 1위 투자국에 해당함
- 과거 봉제·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최근 1차 금속, 전기장비 제조, 전자 부품, 자동차부품, 제약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베트남 투자 분야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이 제조업 투자에 집중되고 있음
- 198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누적 기준, 한국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 부동산업, 건설업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이 약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주요 한국 제조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포스코, 효성, 두산중공업 등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제조업의 해외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순위	1993~2000			2001~2013			2014~'2016. 상반기		
	국가	투자액	비중	국가	투자액	비중	국가	투자액	비중
1	중국	43.1	29.6	중국	314.9	30.0	중국	53.9	32.2
2	미국	37.4	25.6	미국	76.0	7.2	<b>베트남</b>	24.0	14.4
3	인니	7.5	5.1	<b>베트남</b>	48.0	4.6	미국	19.3	11.6
4	인도	6.5	4.4	홍콩	40.5	3.9	멕시코	13.5	8.1
5	<b>베트남</b>	5.6	3.9	인니	25.8	2.5	브라질	7.5	4.5
총계	상위5위	100.1	68.6	상위5위	505.3	48.1	상위5위	118.2	70.6

#### □ 주요기업 진출 현황

- 2016년 말 기준으로 약 4,224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초기에는 가전, 철강 등 중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이 시작되어 섬유 및 의류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확대됨
- 2016년 기준 과거 2년, 향후 2년 후 가장 많은 글로벌 생산기지 이전 계획이 있는 국가가 베트남으로 조사됨
- 최근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가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중국시장과 비교하여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와 낮은 비용구조를 가진 안정적인 시장으로 인식함에 따름
- 최근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자본집약/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진출이 증가함

#### 베트남 진출 주요기업 현황

연번	기업명	업종	종업원 (한국)	종업원 (외국)
1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제조업	70	32,000
2	한일(주) 하노이사무소	제조업	70	1,106
3	삼성 디스플레이	제조업	-	-
4	경남비나(현지법인)	건설·공사업	5	10
5	금호타이어 베트남 유한책임회사	제조업	22	738
6	태광비나	제조업	80	23,000
7	현대비나신조선소	제조업	70	3,400

8	SK텔레콤 베트남	서비스업	10	1,400
9	동리원비나	건설·공사업	2	3
10	대하법인(대우호텔)	서비스업	5	630
11	방림네오텍스(주)	제조업	22	1,800
12	다이아몬드플라자	서비스업	5	154
13	화승비나	제조업	70	15,000
14	롯데베트남쇼핑	서비스업	6	900
15	대한생명보험(주)	금융·보험	3	70
16	영원남딘(주)	제조업	6	10,094
17	대우하넬전자(공장)	제조업	4	640
18	창신베트남	제조업	52	25,000
19	아성비나	제조업	1	13
20	미원 베트남	제조업	12	1,000
21	VPS	제조업	3	227
22	오리온	제조업	27	2,018
23	TSC(대한전선합작법인)	제조업	6	210
24	현대알루미늄비나	제조업	15	200
25	CS윈드타워	제조업	20	1,000
26	삼성비나일렉트로닉스	제조업	20	300
27	포스코 베트남	제조업	29	629
28	CJ 대한통운	운수업	9	320
29	이마트	도소매업	7	345
30	한세실업	제조업	18	4,900
31	효성베트남	제조업	66	4,400
32	LS 전선 베트남	제조업	5	310
33	두산 중공업 베트남	제조업	70	2,450
34	락앤락	제조업	9	800
35	미래에셋증권	금융	3	30

## 7) 베트남의 경쟁력과 한계점

### □ 차세대 ASEAN 경제성장 견인 국가

- 베트남은 2016년 이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세안, 중국,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FTA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TPP, 베트남-EU FTA 등 경제개방 노력으로 미국, EU, 중국의 우회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음

### □ 한국의 우호적 협력 파트너

- 한국과 베트남은 1956년 5월 1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우호 관계를 확대하며 정치·외교·산업·교육·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
- 2001년 8월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공동선언을 발표함
- 또한 2009년 10월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 2015년 12월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년간 한국의 對수출 및 수입은 60% 이상 증가함
- 2017년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11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며 2020년까지 교역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함

### 베트남의 경쟁력과 한계성

베트남의 경쟁력	베트남의 한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시장 확대</li> <li>- 9천만명의 풍부한 인구 및 소득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내 부품소재 산업 기반 취약</li> <li>- 원부자재 산업 취약으로 중간재는 수입에 의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VFTA, TPP, AEC 등으로 사업여건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및 법률의 투명성 결여</li> <li>- 불명확한 법률 및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및 공공조달 수요 증가</li> <li>- 2018년부터 ODA 제한에 따라, 민관협력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최근 민관협력 투자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2020년에는 법률 제정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확대</li> <li>- ATIGA, ACFTA, CPTPP 및 EVFTA를 활용한 관세인하 및 해외기업들의 베트남 시장진출 확대로 베트남 내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따른 M&amp;A 시장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 추진 정부 자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인건비 및 젊은 인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 노동력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영토 및 풍부한 자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수출의존도</li> <li>- 대외리스크 노출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 용이성</li> <li>- 중국과 접경하고 있으며, 동쪽 해상 루트로 미국 등 주요 시장 접근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투 기업과 베트남 기업의 투트랙 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 AEC, EU FTA 체결 등 FTA 허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증가세</li> </ul>

---

## 제 2 장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TBT)

---

# 1

## 베트남의 무역기술장벽

### 1) 베트남의 연도별 WTO TBT 통보문 현황

#### □ 2008~2012년 베트남의 TBT 통보문

- 2008~2012년까지의 베트남 TBT 통보문은 평균 5건으로 고르게 발행됨
- 총 25건의 통보문 중 정규 통보문은 22건으로 약 88%를 차지하였으며 부록 및 첨부 통보문은 3건 발행됨
- 규제 목적별로는 통보문수를 기준으로 안전,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이 있었으며 상기 3개 규제 목적의 통보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계
통보건수	4	5	6	6	4	25



통보연도	통보건수	통보문 종류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2008년	4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4	0
2009년	5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5	0
2010년	6	정규 통보문	부록/첨부 통보문
		4	2
2011년	6	정규 통보문	부록 통보문
		5	1
2012년	4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4	0
총 계	25	2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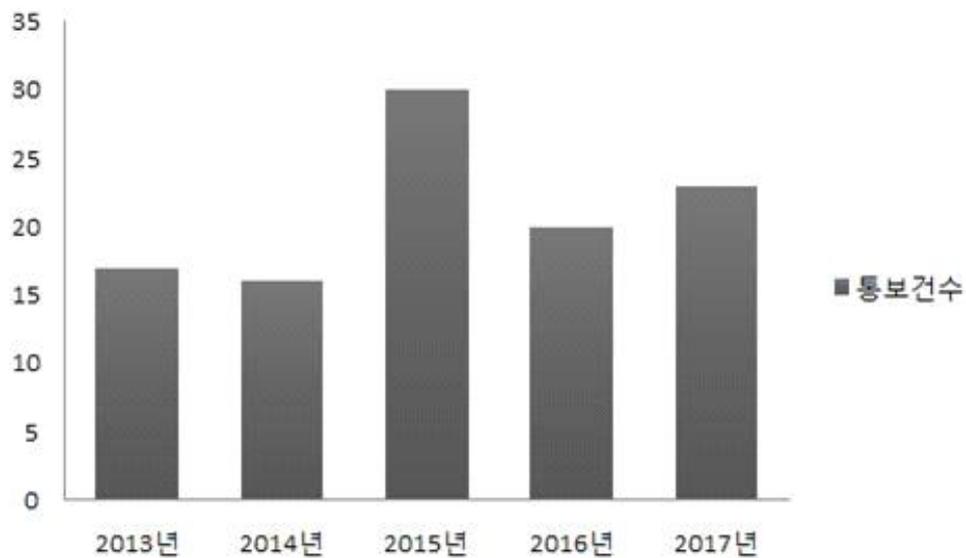
규제의 목적	통보문수
1.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6
2. 기만적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5
3.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
4. 기타	4
5. 기만적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2
6. 기만적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기타(Other)	2
7.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조화(Harmonization)	1
8. 품질 요건(Quality requirements)	1
총 계	25

#### □ 2013~2017년 베트남의 TBT 통보문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서 발표한 TBT 통보문은 총 106건으로 연평균 21건이 통보되고 있음
- 2013년 통보문수가 1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15년 다시 증가하여

매년 비교적 고르게 통보문을 발행함

- 2013~2017년까지 통보문의 종류별 발표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 통보문은 93건을 기록하였으며 부록/정정/첨부 통보문은 13건을 기록함
- 통보문수를 기준으로 한 2013~2017년간 주요 규제 목적으로는 안전,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및 라벨링, 품질 요건, 환경 보호 등이 있었음
- 상기 4개의 규제 목적이 전체 통보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이며, 실질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규제의 목적은 안전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함



통보연도	통보건수	통보문 종류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첨부 통보문
2013년	17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첨부 통보문
		14	3
2014년	16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15	1
2015년	30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27	3
2016년	20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15	5
2017년	23	정규 통보문	부록/정정 통보문
		22	1
총 계	106	93	13

규제의 목적	통보문수
1.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74
2.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Consumer information, labelling); 품질 요건(Quality requirements)	6
3.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6
4. 기만적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4
5. 품질 요건(Quality requirements)	4
6. 기타	5
7. 기만적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ces and consumer protection);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2
8.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
9. 동물 또는 식물 생명, 건강 보호(Protection of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1
10.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품질 요건(Quality requirements)	1
11. 환경 보호(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품질 요건(Quality requirements)	1
총 계	106

## 2) 베트남의 WTO TBT 통보문 산업별 동향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설			2		2
교통/안전	2	1	8	1	2
기계		2	2		1
바이오환경		1			
생활용품			3	1	5
소재나노	2		1		
식의약품	12	4	3	5	2
에너지			2		2
전기전자				2	1
정보디지털				2	
화학세라믹	1	8	7	4	7
기타			2	5	1
계	17	16	30	20	23

### □ 식의약품산업 TBT 통보문 동향

- 식의약품분야의 TBT 통보문은 2013년 12건이 발행되어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준 7건이 발행되어 베트남 내 발행 TBT 통보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의 경우 12건의 통보문 중 식품에 대한 통보문은 11건이었으며 그 외 의료기기 1건이 있었음
- 2016년 발표된 통보문의 경우 의료기기에 대한 통보문이 3건, 식품에 대한 통보문이 2건이었음
- 2017년에 발표된 식의약품분야 TBT 통보문 2건은 수입식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임
- 2018년 TBT 통보문은 의약품에 대한 통보문 3건, 식품에 대한 통보문이 4건 발표되었으며, 식품첨가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회람안, 유해성 제품 및 상품 목록의 발표 회람안 등이 발표됨

## □ 화학세라믹산업 TBT 통보문 동향

-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베트남 화학세라믹분야 TBT 통보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국가기술규정 초안 발표에 대한 내용이었음
- 2017년도 통보문 중 2건은 가정 및 의료용 살충제·살균제 등 일부 자국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규제가 있었음

## □ 교통/안전산업 TBT 통보문 동향

- 교통/안전분야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기술규정 초안 발표에 대한 내용이 다수였음
- 2015년 발표된 8건의 통보문 중 2건의 통보문은 일반 고형 폐기물과 면제된 차량의 특혜 파기 관리 규제, 고철 수입 및 중고 선박의 수입 및 폐기에 관한 규제 내용이 있었음
- 2018년 발표된 4건의 통보문은 장애자의 편리한 접근을 목적으로 설계한 시내버스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철도차량의 승인시험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등이 있음

## □ 생활용품산업 TBT 통보문 동향

- 2015년부터 생활용품분야 TBT 통보문이 발표되고 있으며 생활용품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이 발표됨
- 2017년에 발표된 5건의 TBT 통보문은 모두 완구의 안전, 산악 슬라이드의 안전작동, 방호복, 보호장구-안전화 등 생활용품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임

### 3) 베트남의 WTO TBT 통보문 전체 동향 및 시사점

#### □ QCVN 기술규정

- 베트남의 TBT 통보문 중 상당수는 QCVN 기술규정 발표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QCVN 기술규정은 베트남의 국가기술규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준수 의무를 부과함
- 2018년 10월까지 발표된 TBT 통보문의 경우에도 농업분야, 에너지분야, 교통분야 등 22건 중 12건이 국가기술규정과 관련된 내용임

#### □ 식품 안전 강화

- 베트남 정부에서는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한 신규 시행령을 공포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있음
- 이러한 관리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베트남의 식품안전 관리 및 단속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함

#### □ 에너지 효율 규제

- 베트남의 산업별 TBT 통보문 중 전기전자분야는 주목할 만한 많은 양의 기술규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음
- 지난 2017년 개정된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 및 대응하여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

## 제 3 장 베트남의 표준, 인증제도

---

# 1

## 베트남의 표준 제도

### 1) 베트남의 국가 표준 체계 구성

#### □ 베트남 인정기구 (Bo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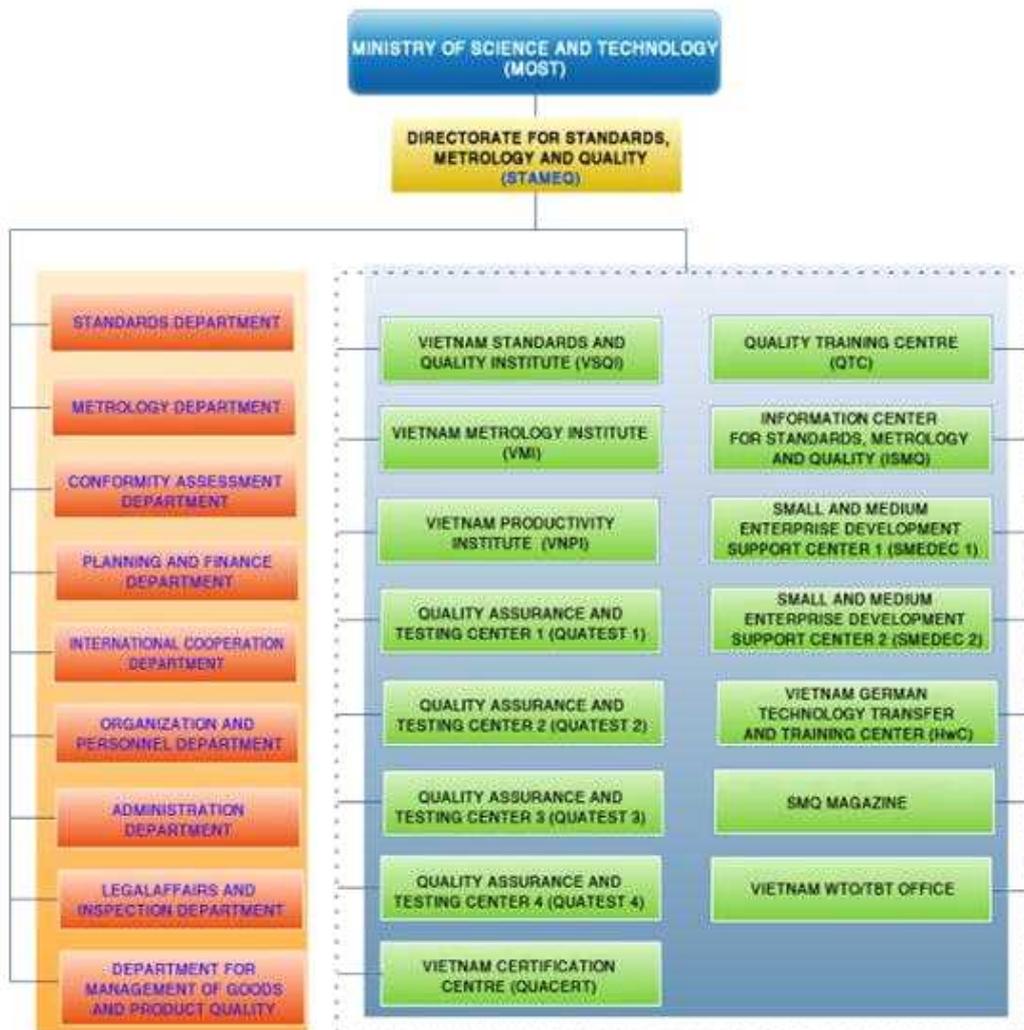
- 베트남 인정기구(Bureau of Accreditation; BoA)는 1995년 설립되어 과학 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권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소, 인증 및 조사기관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 IAF 및 ILAC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KOLAS, KAB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
-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의 운영 및 기술 능력 증진을 목표로 함

#### □ 베트남 국가 표준 기관 (STAMEQ)

- 베트남 기술표준원(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TAMEQ)은 베트남 국가표준·인증, 계량, 품질 및 무역기술장벽(TBT)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소속 정부기관으로 관련 산하기관을 다수 두고 있음
- STAMEQ은 1962년 설립되어 국내 표준화, 측정, 품질관리분야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제정하는 국가 표준화 활동을 수행함
- STAMEQ에서는 국가표준(TCVN) 초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국제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베트남 표준의 적용을 촉진함
- STAMEQ은 MOST 지정 범위 내에서 베트남 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시행을 안내하며 타 부처 범위의 국가 기술규정 개발에도 참여함
- STAMEQ 산하에는 QUATEST 1(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No 1), QUATEST 2, QUATEST 3, QUACERT 센터(베트남 인증기관) 총

4개의 인증기관이 있음

- STAMEQ 산하 인증기관에서는 기업·개인을 위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개인은 국제 인증 표준 또는 TCVN, QCVN, 해외표준, 지역표준(EN, CEN 등), 국제기준 등 기술 사양 부합을 확인하여야 함



STAMEQ 조직도

## 2) 베트남의 국가 표준

### □ TCVN 표준

- TCVN 표준은 베트남 기술표준원(STAMEQ)에서 운영하는 표준으로 TCVN 표준은 일반 표준, 용어 표준, 표준 기술 요건 뿐만 아니라 시험 방법 및 샘플링 표준, 라벨링 표준, 포장, 운송 및 저장, 기계공학, 건설, 화학, 가스, 광물, 농업, 식품, 환경, 안전, 전기, 전자, 정보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표준이 있음

### □ TCVN 인증

- TCVN 인증은 제품이 베트남 국가표준의 필수 요건을 충족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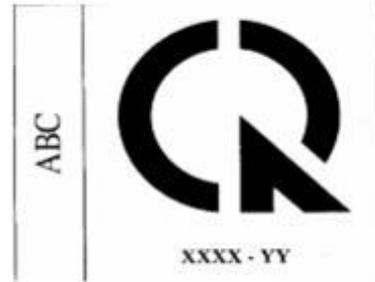


□ TCVN Technical committee

- STAMEQ는 TCVN 규격의 준비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트남 기술위원회 (TCVN/TC- Vietnam Technical Committee)를 설립함
- TCVN/CASCO, TCVN/F 16/SC 3, TCVN/JTC 1 등 176개의 기술위원회를 통하여 TCVN 표준을 제·개정하고 있음

## 2

# 베트남의 강제 인증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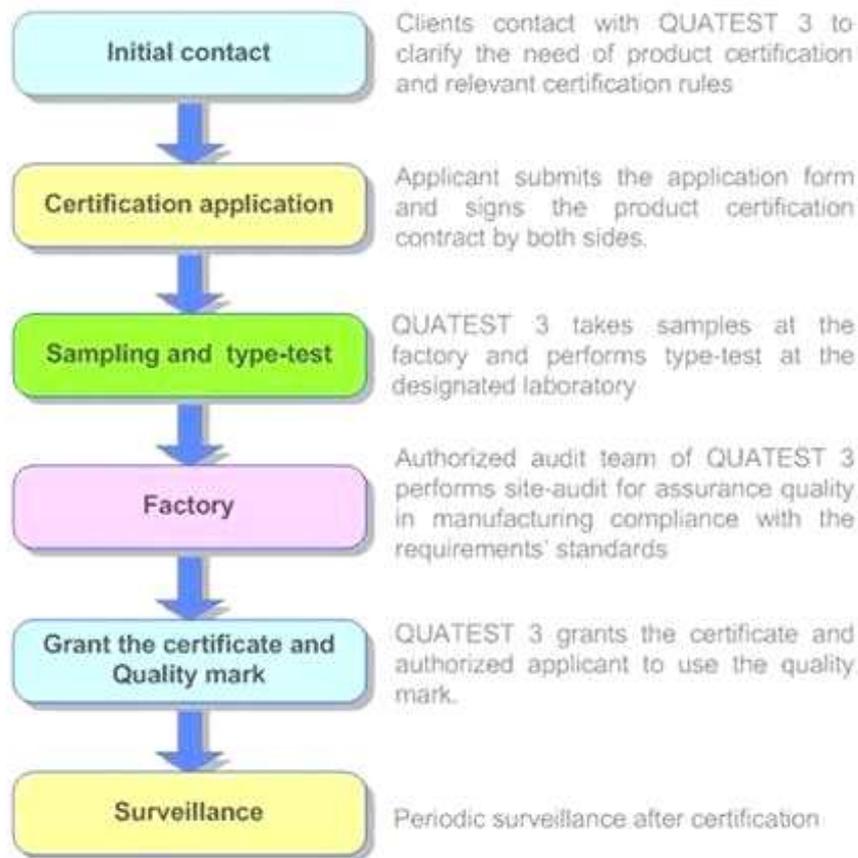


### 1) 베트남의 강제인증 제도

#### □ CR 강제 인증

- QCVN은 강제인증제도로 품질, 안전,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STAMEQ에 의하여 규정됨
- 강제인증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품목 외의 품목 수입시 국제 표준 또는 국가표준(JIS, BS, ASTM 등)에 부합할 경우 허용됨:
  - 휘발유
  - 바이오 연료
  - 디젤유
  - 오토바이 헬멧
  - 노동자 보호장구
  - 장난감
  - 전기가전제품
  -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 Hot-rolled steel and pre-stress steel
  - LPG
  - 전자파 적합성(EMC)
  - 시멘트 및 클링커
  - 시멘트, 콘크리트
  - 비료와 살충제
  -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식품 포장재

- 어패류 및 기타 식품류
  - 가축사료
  - 섬유와 의류제품
- 인정기구는 BoA이며 인증기관은 QUAERT으로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
- 강제 대상품목일 경우 평가기관에서 자기적합성선언의 점검 및 적합성 인증서 발급 이후 품질관리기관에서 다시 적합성 확인 후 등록 및 선언을 하여야 시장판매가 가능함



- 기술기준에 관하여 베트남 법률(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에서 QCVN과 TCVN 두 종류가 규정됨
- 수입제품은 시장 유통 전 CR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인증업체 또는 기관명(AAA), 인증번호(XXXX), 인증서 취득년도 두자릿수(YY)가 포함됨
- 안전인증제도는 Scheme 5\* 및 7\*\*이 적용됨
- \* Scheme 5: 사후관리 차원에서 9개월마다 정기 공장심사 및 샘플시험을

- 받아야 하며 초기 신청 시 형식시험, 공장심사 및 사후감시가 실행됨
- \*\* Scheme 7: 인증서는 1번 유효하며 매번 선적되는 로트마다 scheme 7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절차는 형식시험 및 사후감시가 실행됨
- 인증 신청시 베트남 인정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더라도 Scheme 7에는 추가 샘플이 요구되며 Scheme 5일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샘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샘플수량은 제품마다 다르게 요구됨
  - 인증서는 해외제조자의 회사명으로 발급 가능하며 수입자가 제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제조자명으로 발급된 인증서를 제시하여 통관 가능함

## 2) 베트남의 임의인증 제도

### □ CR 임의 인증

- 베트남 법률에 따른 기술규정(QCVN)에 해당하는 제품은 강제 인증 대상이지만 TCVN에만 해당되는 제품은 임의 인증 적용 대상임
- CR 임의 인증은 강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음

### 3) 베트남의 기타인증 제도

#### □ 자동수입허가 제도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은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자동수입허가 적용이 배제됨
- 자동수입허가를 위한 신청은 품목별로 해야하며 발급비용은 무료임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이며 우편으로 산업무역부 본부 또는 산업무역부 사무소로 송부하여야 함
- 자동수입허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이내에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을 가짐
- 자동수입허가서를 분실·훼손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하여 재발급 또는 수정이 가능함

#### □ 환경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에 따라 다음 전기·전자제품군의 납,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군의 유해물질 함유량은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음향·시각장비
  - 자동판매기
  - 작업도구 (공업용 대형 설치 공구 제외)
  - 대형 가전제품
  - 조명기기
  - 소형 가전기기
  - 스포츠장비

- 장난감
- 예외 품목은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전자제품(EEE) 보수/수리용 부품, 전시회/박람회 기념품, 샘플, 전시품, 환적물품임
- 베트남에서 유통하기 위한 생산자·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수록·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이전에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수입이 금지 품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하여야 함
- 베트남 자원환경부의 환경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제품은 베트남으로 수입이 금지됨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및 의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및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기물
  - 원료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재활용품
- 재활용품의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함

## □ 전자램프와 조명기구 인증

- 전자램프 및 조명기구는 2013년 7월부터 에너지 라벨 부착 대상이었으나 2016년 1월부터 EMC 인증마크의 대상으로도 포함됨
- TCVN 8249 및 TCVN 7896을 적용한 에너지 라벨 표기를 하여야 하며 수입 형광등류는 에너지 라벨이 부착되어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자유 판매권을 허가받을 수 있음
- 전자램프의 EMC 인증은 QCVN 9:2012/BKHCN를 적용하며 특히 무선전파 교란 제한치는 TCVN 7186에 따르도록 함
- 수입품이 EMC인증을 받고 CR 인증마크를 부착하여야만 베트남 시장에서 통관과 자유 판매권이 허가됨
- 시험은 근무일 기준 7~10일 소요되며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임
- 에너지 라벨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수입 형광등류는 각 선적당 유효하며, 현지 제조 형광등류는 최대 3년 유효함
- 조명기구 품목의 TCVN은 대부분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마련됨

TCVN 표준	동일 국제 표준	규정 대상
TCVN 8781:2015	IEC 62031:2014	일반조명용 LED 모듈 (안전 규정)
TCVN 8783:2015	IEC 62612:2013	일반조명 애플리케이션용 LED전구: 전압 50V 이상 (기능 요구 규정)
TCVN 10901:2015	IEC 62707-1:2013	일반적 요구사항
TCVN 10886:2015	IES LM-79-08	고체조명(SSL) 제품의 사양 및 광학 측정
TCVN 10887:2015	IES LM-80-08	LED 광원의 광속 유지 능력 측정

## □ 의료기기 인증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제와 라이선스 요건 등에 따라야 함

- Circular 30/2015/TT-BYT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의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의료기기의 인증승인검사기관은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 및 보건국임
- 외국산 의료기기는 제조국 관할기관에서 발행되는 CFS 또는 미국 FDA가 발행한 CFS 혹은 CE인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 부록 1에 명시된 해외에서 제조된 의료기기 외에도 베트남에 최초 수입되는 새로운 진찰, 치료 기기 또한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수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해외 제조 의료 기기들은 ISO 13485 또는 ISO 9001 인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수입 의료기기는 세 가지로 분류됨
  - Circular 30/2015/TT-BYT에 명시된 의료기기: 보건부의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 베트남에 최초 수입되는 새로운 진찰, 치료 기기 : 보건부의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 기타 의료기기 : 보건부 수입 라이선스 불필요하며, 필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함
- 수입허가 신청 구비 서류
  - 수입허가 신청서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ISO(국제품질관리기준) 13485 또는 9001을 충족하는 증명서
  - 의료장비의 소유권자가 수입 기관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는 승인서
  - 베트남어로 된 의료장비의 유형을 설명하는 기술 자료
  - 의료장비의 기능 및 기술적 매개 변수를 설명하는 카탈로그
  - 의료장비 소유자 또는 제조자의 임상평가자료 및 설명서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5일이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
- 의료기기 및 보건국
  - 전화: (84.4) 6273 2272 / (84.4) 6273 2272
  - 팩스: (84.4) 6273 2279

- 이메일 : dungbv.ttbct@moh.gov.vn
- 홈페이지 : www.moh.gov.vn
- 한국 내 대표 사무소 없음

## □ 화장품 적합성 평가

- 베트남 보건부(MoH) 조례06/2011/TT-BYT 내 화장품에 대한 베트남 정부관리 사항에 근거함
- 베트남은化妆품을 사람 피부에 직접 닿고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으로 구분하고 있어 판매유통 목적의 베트남 내 화장품 수입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에서 승인한 제품고시번호를 받은 화장품에 한하여 수입이 가능함
- 제품고시번호는 수입업자가 화장품 제품 고시 양식 작성 시 필요로 함
- 베트남 의약국에서 제품고시번호를 취득하기 위해 제조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유효 자유판매증명서가 있어야 함
- 화장품 제조 성분에 대한 규정에 관하여 ASEAN 화장품 통일 규정 협정(ASEAN Cosmetic Directive)과 ASEAN 화장품 지시 부록을 기반으로 공포된 조례06/2011/TT-BYT의 5조항을 따라야 함
- 베트남 의약국은 2015년 8월 1일부로 파라벤 5종(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을 함유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함
- 아래 부록에 명시된 화장품 성분은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부록 II: 화장품 구성 성분이 돼서는 안 되는 물질 리스트
  - 부록 III-1항: 화장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 리스트. 다만 성분 제한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음
  - 부록 III-2항: 임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물질 리스트
  - 부록 IV-1항: 화장품에 허용된 착색제 리스트
  - 부록 VI-1항: 허용된 방부제 리스트
  - 부록 VII: 화장품 성분에 포함 가능한 UV 필터 리스트
- 수입 화장품의 경우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될 시 유통 정지와 압수

대상이 됨

- 제품고시번호가 없는 화장품
-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고 부적격한 화장품
- 금지물질 또는 허용범위 물질 함량을 초과한 화장품
- 발표된 정보와 라벨이 일치하지 않거나 라벨 규정을 위배한 화장품
-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 위조품, 밀수품, 원산지가 불명확한 제품, 포장이 훼손된 화장품
- 현지 유통업체들의 자체 결정에 따라 압수된 화장품

#### 화장품 등록 시 필요 서류

서류명	상세 내용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수입업자가 현지에서 작성
제조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제조업증명서(Authorization Letter from the Manufacture)	대한화장품협회 발급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업체 발급
성분리스트(Listed Ingredients)	% 표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수입업자에 대해 제조업체가 발급한 수출판매위임장

- 인증서 발급비용은 500,000원이며 근무일 기준 3~5일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5년임

- 의약국

- 전화 : (84.4) 37366 674 / (84.4) 3736 6483
- 팩스 : (84.4) 3823 4758
- 이메일 : [congbomypham.qld@gmail.com](mailto:congbomypham.qld@gmail.com)
- 홈페이지 : [www.dav.gov.vn](http://www.dav.gov.vn) / [www.congbomypham.cqldvn.gov.vn](http://www.congbomypham.cqldvn.gov.vn)
- 한국 내 대표 사무소 없음

## □ 완성차 및 부품 적합성 평가

- 베트남 교통부의 No.51/2008/ND-CP에 근거한 차량 및 안전 부품에 대한 품질,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수립한 강제적인 형식 승인 인증 제도임
- 수입되는 완성차에 관하여 수입자는 수출국가의 허가를 받은 각종 테스트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인증서는 자동차가 판매될 국가의 기준에 차량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주로 수출국가에서 발행함
-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샘플 테스트-서류 심사-공장 심사-평가/승인-인증서 발급의 절차로 이루어짐
- 정기적으로 사후 심사가 진행되며 불심 검사는 생산업체가 품질검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거나 제품품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에 시행
- 생산현장에서의 품질검사 조건평가 내용은 ISO/TS 16949의 차량부품, 자동차 생산, 조립업체의 제품품질관리에 관한 요구에 따라 진행됨

자동차 인증 대상 품목

검사 항목	인증 구분	
	자동차	부품
차량 식별 번호	○	
공통안전 요구사항	○	
중량 및 치수규격	○	
브레이크 시스템	○	○
라이트	○	○
신호등 장치	○	
속도계	○	
혼	○	
에미션	○	
노이즈 레벨	○	
앞유리 및 도어유리	○	○
리어뷰미러	○	○
타이어	○	○
알로이 휠	○	○
화재예방	○	
화재예방 인테리어	○	○
시험운전	○	
수밀시험	○	

## □ 라벨링 규정

-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라벨링 규정 Decree 43/2017/ND-CP, 이하 Decree 43이 2017년 4월 공포되었으며 2019년 6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됨
-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관련 단체 및 개인과 규제 당국에 적용되며 제품 종류에 상관없이 제품명,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및 단체 정보, 원산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베트남어 작성이 기본이지만 국제 의약품·화학식·약물 성분 등 베트남어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들은 외국어(알파벳)로 표시 가능하며 베트남어 글자 크기 보다 작아야 함
- 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Law on Measurement)에 준해야 함
- 부동산, 채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물품, 경매 목적 압수 물품, 광물(mineral), 석유·가스, 전자재(벽돌, 타일, 모래 등), 중고품, 안보 및 국방 관련 제품 등은 해당 라벨링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품목별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음

범주	필수 정보
식료품	① 수량 ② 제조일: 날짜-월-연도(dd-mm-yy(yy)) ③ 유효기간 ④ 경고(있을 경우)
건강보호식품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성분의 양·영양가치(nutritional value)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⑥ 위험 경고(있는 경우) ⑦ 라벨링: '건강보호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⑧ 라벨링: '해당 상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범주	필수 정보
음료수 (주류 제외)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경고(있을 경우)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식품 첨가물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함량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⑥ 라벨링: '식품첨가물(Phụ gia thực phẩm)' ⑦ 경고(있는 경우)
화장품	① 수량 ② 성분 또는 성분량 ③ 로트 번호(Lot number) ④ 제조일 및 유효기간: 제품 안정성이 30개월 이내일 경우, 유효기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⑤ 사용 방법 ⑥ 경고
의료기기	① 의료 기기 유통번호 혹은 수입라이선스 번호 ② 로트 번호 혹은 제품일련번호 ③ 제조일 및 유효기간: 멸균용·일회용 의료기기, 시약(reagent), 보정물질(calibration substances), 관리 물질(control materials), 화학 물질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④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⑤ 보증 조건 ⑥ 경고

## □ 식품 안전 인증

-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 시행령 Decree No.15/2018/ND-CP이 2018년 2월 발효됨
-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 및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공표케 하고,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함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된 가공 식품</li> <li>· 식품 첨가제</li> <li>· 식품 가공 보조제</li> <li>· 식품 용기</li> <li>· 식품 접촉 포장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호식품(건강 보조제, 식이 보조제)</li> <li>· 의약품 영양식품</li> <li>· 특수 식이용 식품</li> <li>·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식품</li> <li>· 새로운 효능을 지닌 혼합 식품첨가제</li> <li>· 식품 사용 허용 첨가제 리스트에 미포함된 식품첨가제</li> <li>· 베트남 보건부가 규정한 사용 대상에 적합하지 식품 첨가제</li> </ul>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관할 기관 제출 서류	① 자체 상품 공표서 1부 ②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 수입 제품의 경우 ① 상품 공표서 1부 ②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수출증명서(Certificate of Exportation) 또는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로서 사용자의 안전 또는 해당 국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상품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④ 수출 국가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이미 공표된 상품의 효능 또는 상품의 효능을 발휘하게 하는 구성 성분의 효능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 (개인 또는 단체의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⑤ 수입 건강보호식품의 경우 GMP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 조건으로서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베트남 국내 생산 제품일 경우 · 수입 제품의 상품 공표서 등록 시 제출서류 중 ①, ③, ④, ⑤ ·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인증서 취득이 요구될 시)

구분	기업 자체적 상품 공표	서류 접수 행정기관에 의한 상품 공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품 생산 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는 제외</li> <li>·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기업 자체적인 상품 재공표 필요</li> <li>·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명, 원산지, 성분 등이 변경될 시, 상품 재공표가 요구됨.</li> <li>· 이외 기타 사항이 변동될 시, 해당 변동 내용에 대해 문서 형태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서류 송부 직후부터 해당 상품의 생산 및 판매가 가능</li> </ul>

-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 후 이에 대한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면제 대상이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
- 사용기한 표기 관련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 사항과 상품명 글자 크기, 라벨 위치 등 라벨 표기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용 영양식품·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상품에 대한 의무 표기 문구 또는 표기 사항만을 규정

내용	대상
보조 라벨 부착 면제	<p>다음 상품에 대해서는 보조 라벨 부착이 면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소비, 선물 용도로 베트남 입국자가 반입한, 관세 면제 한도 내의 상품</li> <li>· 외교 특권과 면제 지위가 부여된 자에 의한 수입품</li> <li>· 국경통과, 환적, 환승, 일시 수입, 재수출 및 보세창고행 상품</li> <li>· 테스트 및 연구용 샘플</li> <li>· 전람회 및 박람회 전시용 상품</li> <li>· 수출품 생산·가공용 상품 및 생산·수입 원료 또는 개인·단체의 내부 생산용으로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는 상품과 생산·수입 원료</li> </ul>
일부 표기 사항 표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표면적이 10cm<sup>2</sup> 미만인 소형 포장물로서, 외부 포장지에 구성 성분, 사용 기한, 보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표기돼 있을 시 해당 사항 표기가 면제됨</li> <li>· 단, 향신료와 식품은 제외</li> </ul>
생산일 표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용기, 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 생산일 표기가 면제됨</li> </ul>

## □ 정보통신기기 적합성평가

- 베트남에서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승인은 2개의 제도로 분류하며 통신기기에 따라 형식승인과 형식승인 선언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제도와 형식 승인 선언만으로 기기를 등록하는 제도로 구분

구분	대상
단말기기	무선전화기, 이동전화기, xDSL
9 Khz 부터 400 GHz 대역, 60 mW 전력에서 운용되는 무선기기	고정 및 이동 서비스를 행하는 무선기기, TV 서비스용 무선기기, 라디오 서비스용 무선기기, 네비게이션 및 텔레미터 서비스 무선기기, 해양 및 항공용 무선기기(해양 및 항공 서비스 제외) 이동해상 무선기기, 아마추어 서비스 무선기기, 레이더, 네비게이션 기기, 전파를 사용하는 경보기 및 리모콘 기기, RFID 기기
송신기기	무선 송신기기 등

- 형식승인 규제대상 ICT 기기는 circular No. 05/2014/TT-BTTTT에 따르며 제조·수입기기 → 시험 → 인증 → 신고 → 라벨링 → 판매의 절차를 따름
- 시험기관은 MIC로부터 지정, 인정된 기관 또는 ICTQC로부터 인정된 외국시험소이며, 관련규정인 07/2009/TT-BTTTT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증에는 10일 이내 소요됨

- 형식승인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적용되는 인증 방식에 따라 Scheme 1 과 Scheme 2로 구분됨

Scheme 1	Scheme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승인 신청서</li> <li>- 법인자격 증명 서류(다음 서류중 공증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설립 허가서, 투자증명서/투자 허가서</li> <li>·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li> </ul> </li> <li>※ 방문 제출의 경우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제출</li> <li>- 지정 시험기관이 발급한 측정결과</li> <li>- 제품명, 제품의 기호 및 기술정보, 완성품 사진, 생산 브랜드 포함 기술자료</li> <li>- 품질관리체계인증서 복사본</li> <li>※ 국내 생산 제품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식승인 신청서</li> <li>- 법인자격 증명 서류(다음 서류중 공증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설립 허가서, 투자증명서/투자 허가서</li> <li>·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li> </ul> </li> <li>※ 방문 제출의 경우 원본과 복사본을 같이 제출</li> <li>- 제품명, 제품의 기호 및 기술정보, 완성품 사진, 생산 브랜드 포함 기술자료</li> <li>- 생산과정 및 품질사후관리과정</li> </ul>

- 형식승인 선언 규제대상 ICT 기기는 circular No. 05/2014/TT-BTTTT에서 명시함

구분	대상
단말기기	TE connected to public networks using 2-wire interface, PABX exchange, TE connected to public telecom network using leased line
IT 기기	데스크탑, 서버, 노트북 및 휴대용 컴퓨터, PDA, 라우터, 허브, 스위치, 게이트웨이

- 형식승인 선언대상 신청을 위해 공급자는 인증기관에 의해 형식승인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결과와 해당 기술기준을 비교·검토하여 공급자 자체 적합성을 평가한 후에 형식승인 선언 신청서 및 기타 신청 서류를 지역별 접수처로 송부함

## □ 화재경보기 인증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소화기·화재경보기 2-3위 수입국으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입액을 기록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소비자들의 소방 안전 의식이 제고되며 품질이 보장되는 한국산 제품의 구매 의사가 높아지고 있음

- 화재경보기는 임의인증 대상품목으로 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인증기관이 인증을 발행함
- 179/2004/ND-CP, TCVN5738:2001에 근거하며 시험·인증기관으로는 QUATEST 3, 베트남 표준품질연구소(VSQI)가 있음
- 임의인증 대상 품목은 공장, 발전소, 병원, 학교, 호텔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이며 TYPE C 인증 절차를 통하여 인증을 발행함
- 시험은 15~18만원의 비용 및 1주일이 소요되며, 인증은 65~75만원의 비용과 시험 완료 후 3일이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3년임



## 1)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제도



## □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개요

-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에너지 과소비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됨
- 에너지인증라벨은 에너지 절약 아이콘(베트남 에너지 별)이 그려진 라벨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고에너지성능기준(HEPS: High Energy Performance Standard) 이상의 에너지 성능을 가진 차량 및 장비에 부착됨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가정용 기기, 산업용 기기, 사무용·상업용 기기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너지라벨 부착 지침 작성과 관리·감독 업무를 주관함
- 베트남의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에 규제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판매되기 전 반드시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함
- 신청자는 베트남 현지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외제조자는 베트남 거주 대리인이 있어야 함
- 에너지 라벨은 적합성 에너지 라벨(Confirmative energy label), 에너지 등급 라벨(Comparative energy label)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됨
- 시험은 반드시 산업무역부 지정 시험소에서만 가능하며 수입제품에 대한 별도의 공장심사는 없음
- 현지 제조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며 수입업자에게 발급된 인증서는 6개월간 유효하며 매 선적 시 만료됨

- 수입업자는 매 선적 시 인증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새롭게 신청접수를 하여야 함
- 최소 에너지 성능(MEPS)를 충족하지 못하는 에너지 등급 제품은 수입 금지되어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60W 보다 높은 정격 출력 백열등은 수입 및 생산 금지됨



- 에너지라벨 비교에서 에너지 효율성은 5단계로, 에너지 성능이 효율적인 차량·장비에 부착하며, 별 5개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나
- 이러한 라벨링 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은 해당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정도를 파악하고 다른 업체의 동일제품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음
- 에너지라벨비교 표시에서는 인증코드, 제품이름·코드, 제조자, 수입자, 에너지절약지표, 에너지소비량, 기타 정보가 표시됨
- 에너지 효율성 단계는 타사의 동일제품과 비교한 시간당 소비 에너지양에 따라 평가되며 5단계로 구분, 5개의 별로 표기됨
- 에너지절약지표(에너지효율단계)는 에너지 효율성 검사결과를 통해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지정되며, 에너지 절약제품 인증서에 표기됨



-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라벨 제도의 주관 부처는 교통부임
- 차량 에너지라벨 상에 사용 연료와 연비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연비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효율 자동차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차량 에너지라벨은 두 종류가 있으며 라벨 색으로 구분됨
- 녹색 에너지라벨은 차량등록검사국(Vietnam Register)이 발급하며 차량등록검사국의 연비 테스트 결과가 표시됨
- 황색 에너지라벨은 자동차 제조사 및 승심사가 발행하며, 제조사가 실시한 연비 테스트가 표시되며, 차량등록검사국은 연비 테스트 관련 서류와 테스트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함

#### □ 베트남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 동향

- 2017년 3월 「에너지라벨 부착 및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 품목 리스트 및 시행 일정 규정」 총리 결정문(Decision 04/2017/QĐ-TTg) 공포되어, 4월 25일부터 발효됨
- 에너지라벨 부착 대상 품목에 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으며, 승용차의

적용범위가 기존 7인승 이하에서 9인승 이하로 확대됨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대상 품목**

구분	
가정용 기기	직관 형광등 콤팩트 형광등 형광등용 전자 및 전자기식 안정기 에어컨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전기밥솥 선풍기 텔레비전 <b>LED 등</b> <b>스토리지 유형 온수기</b>
사무용·상업용 기기	복사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상업용 냉장고 <b>노트북 컴퓨터</b>
산업용 기기	배전용 변압기 전동기
차량	승용차( <u>9인승 이하</u> ) <b>오토바이</b> <b>원동기장치 자전거</b>

- 신규 품목의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이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이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 이행기간임
- 자동차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됨
- LED등,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노트북 컴퓨터는 최저 에너지효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에너지효율 인증의 등록 방법으로는 직접 등록하는 경우와 온라인 등록으로 구분됨
- 베트남 에너지 효율 기준 및 라벨링 프로그램 온라인 등록 시스템

(VEESL: Vietnam Energy Efficiency Standards and Labelling Program)은 베트남 현지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베트남의 최소 에너지 성능(MEPS)를 충족하는 에너지 등급 제품의 라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온라인 등록 시스템(VEESL)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의해 통제되며, 다른 사용자에게 의해 접속될 수 없음

구분	직접 송부	온라인 등록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C form of Application</li> <li>- Test report</li> <li>- Draft energy labeling</li> <li>- Technical spec, information capacity of manufactur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g in with Application ID and password</li> <li>- Document required with Imported product</li> <li>- Copies of contracts with supplier of goods</li> <li>-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li> <li>- Declaration imported of goods</li> <li>- Test report</li> <li>- DoC form of application</li> <li>- Document required with local product</li> <li>- Copies of contracts with supplier of goods</li> <li>-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li> <li>- Declaration imported of goods</li> <li>- Test report</li> <li>- DoC form of application</li> <li>- Process of quality management</li> <li>- Certificate of quality management</li> </ul>

#### □ 최저 에너지효율 관련 규정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기기 및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베트남 국가표준(TVCN)에 규정됨
- TVCN에 규정된 각 기기와 차량의 에너지효율은 최저 에너지효율(1등급)을 나타냄

에너지라벨 부착 의무 품목별 국가표준

구분	품목	국가표준
가정용 기기	컴팩트 형광등	TCVN 7896:2015
	직관 형광등	TCVN 8249:2013
	형광등용 전자식 안정기	TCVN 7897:2013
	형광등용 전자기식 안정기	TCVN 8248:2013
	냉장고	TCVN 7828:2013
	가정용 세탁기	TCVN 8526:2013
	전기밥솥	TCVN 8252:2015
	선풍기	TCVN 7826:2015
	스토리지 유형 온수기	TCVN 7898:2009
	에어컨	TCVN 7830:2015
	텔레비전	TCVN 9837:2012
산업용 기기	LED 등	TCVN 8783:2015
	배전용 변압기	TCVN 8525:2015
사무용·산업용 기기	전동기	TCVN 7540-1:2013
	복사기	TCVN 9510:2012
	컴퓨터 모니터	TCVN 9508:2012
	프린터	TCVN 9509:2012
	상업용 냉장고	TCVN 10289:2014
	노트북 컴퓨터	TCVN 7189:2009

- 차량의 연비 측정은 TCVN과 QCVN에 의거함
- 승용차는 QCVN 05:2009/BGTVY, TCVN 7792:2015, TCVN9854:2013 중, 오토바이·원동기장치 자전거는 QCVN 04:2009/BGTVT에 의거함

□ 에너지효율 라벨링 평가 및 인증 절차

- (표준 샘플 테스트) 사업자 측은 실험결과 후 주어지는 기준 시험을 위하여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 샘플을 송부
- (제품 프로필 제작 및 송부) 사업등록 인증서 등본, 상표 등록증, 에너지 사용 차량 및 장비의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증, 상품 및 수입신고에 대한 해외공급자와의 계약서 사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테스트 결과, 사업관련 기록, 서류 및 품질관리 운영절차, 위임장(해외 제조자가 아닌 대리인이 프로필 제출하는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

남어 번역)을 제시하여야 함

- (인증 평가)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에너지국에서 사업역량, 기록 적절 여부, 에너지 절약장비 인증평가를 위해 시험결과를 평가
- (발급)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인증 발급

---

# 태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

- 베트남 통계청 <http://fia.mpi.gov.vn>
- 베트남 Vietnam Standards and Quality Institute(VSQI) [www.vsqi.gov.vn](http://www.vsqi.gov.vn)
- 베트남전력공사(EVN) Vietnam Electricity Annual Report 2012-2016
- 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지역정보-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
-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시장동향-베트남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228>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호치민한국지사협의회(2018.8). 2018년 상반기 베트남 및 한-베 수출입 동향

## 부록 2

# 베트남 강제인증 부처별 관리대상 품목

부처	보건부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설비 및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X-ray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li> </ul> </li> <li>○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li> </ul> </li> </ul>
품질검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MEQ(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함</li> <li>○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함</li> <li>○ 백신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를 필요로 함</li> </ul>
부처	농업농촌개발부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양식용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 생선용 혼합사료, 불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li> </ul> </li> <li>○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 (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li> </ul> </li> <li>○ 가공 수산물제품 (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li> <li>○ 식물 보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li> </ul> </li> <li>○ 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 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li> </ul> </li> <li>○ 동물용 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li> </ul> </li> <li>○ 동물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사료, 농후 사료</li> </ul> </li> </ul>
품질검사기관	○ QUACERT, QUATEST 1,QUATEST 2,QUATEST 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부처	산업무역부
대상 품목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판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품질검사기관	○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Hanoi
내용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함 ○ 제품 수입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통관 가능

부처	운송부
대상 품목	○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 분야용 보일러, 수송 분야용 가압탱크, 수송 분야용 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품질검사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내용	○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 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을 통보 가능

부처	건설부
대상 품목	○ 포틀랜드시멘트 (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출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 (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품질검사기관	○ QUACERT, QUATEST 1,QUATEST 2,QUATEST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내용	○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 ISO9001: 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함 ○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함

부처	노동보훈사회부
대상 품목	○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품질검사기관	○ QUACERT, QUATEST 1,QUATEST 2,QUATEST 3
<b>부처</b>	<b>과학기술부</b>
대상 품목	○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출응력용 강철 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 휘발유, 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품질검사기관	○ QUACERT, QUATEST 1, QUATEST 2, QUATEST 3
내용	○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함

**부록 3**

**베트남 인증 대상 품목 기술규정 현황**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Toys	QCVN 3 : 2009 / BKHC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of toys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Building	QCVN 16:2011/BXD	Vietnam Building Code on Products, Goods of Building Material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Liquefied petroleum gas (LPG)	QCVN 8:2012/BKHC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iquefied petroleum gases
Gasoline, diesel and biofuels	QCVN 1:2009/BKHC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asoline, diesel fuel oils and biofuels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Food	QCVN 3-1 :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ubstances may be added for zinc fortification in food
	QCVN 3-2: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lic acid for food fortification
	QCVN 3-3 :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ubstances may be added for iron fortification in food
	QCVN 3-4: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ubstances may be added for calcium fortification in food
	QCVN 3-5: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ubstances may be added for magnesium fortification in food
	QCVN 4-1: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Flavour enhancer

QCVN 4-2: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Humectants
QCVN 4-3: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Raising agents
QCVN 4-4: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Anticaking agents
QCVN 4-5: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Colour retention agent
QCVN 4-6: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Antioxidant agents
QCVN 4-7: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Antifoaming Agent
QCVN 4-8: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Sweeteners
QCVN 4-9: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Firming agents
QCVN 4-10 :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Colours
QCVN 4-11: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s - Acidity regulators
QCVN 4-12: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Preservatives
QCVN 4 - 13 :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Stabilizers
QCVN 4-14: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Sequestrants
QCVN 4-15: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Flour treatment agents
QCVN 4-16: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Bulking agents
QCVN 4-17: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Propellants
QCVN 4-18: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Modified starches
QCVN 4-19: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Enzyme
QCVN 4-20: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Glazing agent
QCVN 4-21: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Thickeners
QCVN 4-22: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Emulsifier
QCVN 4-23: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 Additive - Foaming agents
QCVN 5-1: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luid milk products
QCVN 5-2: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powder milk products
QCVN 5-3: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cheese products
QCVN 5-4: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dairy fat products
QCVN 5-5: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fermented milk products
QCVN 6-1: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bottled/package natural mineral waters and drinking waters
QCVN 6-2: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soft drinks
QCVN 6-3: 2010/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for alcoholic beverages
QCVN 8-1: 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he limits of mycotoxins contamination in food
QCVN 8-2: 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he limits of heavy metals contamination in food
QCVN 8-3: 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f Microbiological contaminants in food
QCVN 12-1 : 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and hygiene for synthetic resin Implement, container and packaging in direct contact with foods
QCVN 12-2: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and hygiene for rubber implements, container and packaging in direct contact with foods

	QCVN 12-3:2011/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and hygiene for metallic containers in direct contact with foods
	QCVN 12-4: 2015/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he safety and hygiene glass, ceramic, porcelain and enameled implements, containers, and packaging in direct contact with food
	QCVN 18-1:2015/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processing aids - Sovents
	QCVN 19-1:2015/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foodflavoring-Vanillaflavouring substaces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QCVN1:2008/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ublic postal services
	QCVN2: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hysical/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hierarchical digital interfaces
	QCVN3: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bit error rate of digital transmission path
	QCVN4: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Connection characteristics of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SDH) Leased Line
	QCVN5: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quality of 2 048 kbit/s digital structured leased lines
	QCVN6: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network interface of 2 048 kbit/s digital unstructured and structured leased lines
	QCVN7: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optical interfaces for network interconnection equipments relating to the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QCVN8: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omagnetic exposure from public land mobile base stations
	QCVN9: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arthing of telecommunication stations

QCVN10: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Cordless Telephone Equipment
QCVN11: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HS terminal equipment
QCVN12: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SM mobile stations(Phase 2 and 2+)
QCVN13: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800 MHz CDMA 2000-1x mobile station
QCVN14: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Cellular Mobile CDMA 2000 - 1x Base Station Equipment
QCVN15: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Mobile Stations for W-CDMA FDD
QCVN16: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base stations for W-CDMA FDD
QCVN17: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for transmitting equipment for the analogue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
QCVN18: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eneral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Radio Communications Equipment
QCVN19: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eneral requirements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to be connected to an analogue subscriber interface in the PSTN
QCVN20: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eneral requirements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connected to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PTNs) using Digital Leased Circuits at data rates of n x 64 kbit/s
QCVN21: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eneral requirements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connected to the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PTNs) using 2048 kbit/s Digital Structured Leased Line
QCVN22: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ical safety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s
QCVN23: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angle-modulated 27 MHz citizen's band radio equipment
QCVN24: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HF transmitter as coast station for GMDSS
QCVN25: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double side band and/or single side band amplitude modulated 27 MHz citizen's band radio equipment
QCVN26: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for fixed installation in survival craft
QCVN27: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Inmarsat-B ship earth station equipment
QCVN28:2010/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Inmarsat-C ship earth station equipment
QCVN29: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for transmitting equipment for the amplitude modulated (AM) sound broadcasting service
QCVN30: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for transmitting equipment for the frequency modulated (FM) sound broadcasting service
QCVN31: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radio spectrum for terrestrial digital television broadcast (DVB-T) transmitting equipment
QCVN32: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ightning protection for telecommunication stations and outside cable network
QCVN33: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installation of outside telecommunication cable network
QCVN34: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quality of ADSL Internet Access Service
QCVN35: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quality of

	telephone service on the Fixed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QCVN36: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quality of telephone service on the Public Land Mobile Network
QCVN37: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and Mobile Radio Equipment using an integral antenna intended primarily for analogue speech
QCVN38: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SAT equipment (C band)
QCVN39: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SAT equipment (Ku band)
QCVN40: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Mobile Earth Stations for Global Non-Geostationary Mobile-Satellite Service Systems in the Bands 1 - 3 GHz
QCVN41: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GSM base stations
QCVN42: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and mobile radio equipment having an antenna connector intended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and speech)
QCVN43: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and Mobile Radio Equipment having an antenna connector intended primarily for analogue speech
QCVN44: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and Mobile Radio Equipment using an integral antenna intended for the transmission of data (and speech)
QCVN45: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oint to multi-point digital radio equipment below 1 GHz using TDMA
QCVN46: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oint-to-multipoint digital radio equipment below 1 GHz using FDMA
QCVN47: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radio spectrum and radiation of Radio Telecommunications Equipments

QCVN48: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oint - to - multipoint radio equipment below 1 GHz using DS-CDMA
QCVN49: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oint-to-multipoint radio equipment below 1 GHz using FH-CDMA
QCVN50: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HF radiotelephone used on the survival craft
QCVN51: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HF radiotelephone used on inland waterways
QCVN52: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VHF radiotelephone for the maritime mobile service
QCVN53: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oint-to-point SDH radio equipments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s up to 15 GHz
QCVN54: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radio equipments operating in the 2.4 GHz band and using spread spectrum modulation techniques
QCVN55: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hort range devices - radio equipment in the frequency range 9 kHz to 25 MHz
QCVN56: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amateur radio equipment
QCVN57: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s (EPIRBs) operating in the 406,0 MHz - 406,1 MHz frequency band
QCVN58: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digital selective calling equipment
QCVN59: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MF and HF radio telephone
QCVN60: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transponders for search and rescue radar
QCVN61: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UHF radio telephone
QCVN62:2011/BTTT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radiotelex equipment operating in maritime MF/HF

	service
--	---------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Electronic	QCVN 4: 2009/BKHCH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appliances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A n i m a l feeding stuff	QCVN 01-10:2009/BNNPTN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Animal feeding stuffs-Maximum level of antibiotics, drugs, microorganism and heavy metals in completed feeds for chickens
	QCVN 01-11:2009/BNNPTN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Animal feeding stuffs - Maximum level of antibiotics, microorganism and heavy metals in completed feeds for ducks
	QCVN 01-12:2009/BNNPTN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Animal feeding stuffs-Maximum level of antibiotics, drugs, microorganism and heavy metals in completed feeds for pigs
	QCVN 01-13:2009/BNNPTN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Animal feeding stuffs-Maximum level of antibiotics, drugs, microorganism and heavy metals in feeds for calves and beef cattle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Water quality	QCVN 01 : 2009/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drinking water quality
	QCVN 02 : 2009/BY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domestic water quality

분야	표준 번호	표준명
motorcycle	QCVN 2 : 2008/BKHCH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protective helmets for motorcycle and moped users



**7. Hệ thống, công cụ quản lý chất lượng đã áp dụng (nếu có)**

ISO 9001	Kaizen-5S	TQM	TPM	TPS	Six Sigma
<input type="checkbox"/>					

Hệ thống, công cụ quản lý chất lượng khác:

---

**8. Đánh giá thử:** Không yêu cầu  Có , thời gian: \_\_\_\_ / \_\_\_\_ /200\_\_

**9. Ngày đề nghị đánh giá chính thức:**

---

**10. Các tài liệu kèm theo:**

- a) Sơ đồ tổ chức của doanh nghiệp
- b) Các tài liệu kỹ thuật của sản phẩm
- c) Quy trình sản xuất, kế hoạch kiểm soát chất lượng
- d) Kế hoạch kiểm soát thiết bị đo kiểm
- e) Phiếu kết quả thử nghiệm sản phẩm đăng ký chứng nhận (nếu có)
- f) Tài liệu khác:

Ngày \_\_\_\_ tháng \_\_\_\_ năm 200\_\_  
**Đại diện có thẩm quyền của doanh nghiệp**  
(Ký tên, đóng dấu)